



# 협력사 지속가능경영 정책

Leading A Sustainable Future With Green Cable Solutions

---

# 협력사 지속가능경영 정책

## I. 개요

### 1. 제정목적

본 정책은 전 협력사에게 기업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최선의 운영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LS전선은 협력사가 본 정책을 준수하여 더욱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상호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협력사들과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2. 적용범위

본 정책은 LS전선(국내외 출자법인 포함)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에 적용됩니다. 또한 본 정책의 적용 대상인 협력사는 그들의 공급망(하위 공급망)에 본 정책을 실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3. 협력사 책임과 역할

모든 협력사는 사업운영과정에 있어 본 정책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LS전선은 협력사가 본 정책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시하기 위하여 협력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점검 및 실사는 LS전선 또는 LS전선의 위탁을 받은 제3의 기관을 통해 진행될 수 있으며, OECD 실사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 이러한 점검 및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LS전선은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본 정책은 협력사의 의무사항을 모두 명시한 것은 아니며 LS전선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 4. LS전선의 노력

LS전선은 협력사와 거래 계약 체결 시 본 정책을 공유하고 있으며, 정기 실사를 통해 본 정책 준수를 강조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협력사 및 협력사 근로자가 LS전선과의 거래 관계 및 사업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고충을 신고 및 제보할 수 있도록 비윤리행위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익명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

## II. 기본원칙

### 1. 준법·윤리경영

협력사는 준법·윤리경영을 실천하고 기업을 바르게 경영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 (1) 법규 준수

LS전선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는 거래 관계 및 영업 활동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해야 합니다.

#### (2) 비즈니스 청렴성 및 공정거래

협력사 및 그 임직원은 거래 관계에서 청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의 뇌물도 제공하거나 수령하지 않아야 하며, 횡령 등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공정한 자유 경쟁을 저해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3) 상생협력

협력사는 상생협력을 위한 당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정한 거래관계가 지속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합니다.

#### (4) 지적재산권 보호 및 위조 사용 금지

협력사는 당사를 포함해 공급망 내 모든 협력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영업비밀, 내부정보, 기술/노하우 등 상호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위조부품 또는 무허가 원료 및 부품을 사용하거나 생산, 판매하지 않습니다.

#### (5) 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모든 이해관계자(고객사, 협력사,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정보보안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6) 책임 있는 원자재 구매

협력사는 구매한 원자재가 생산, 유통되는 중 심각한 인권침해, 혹은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당사와의 거래 시 분쟁광물\*)을 당사 허가없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콩고 및 주변국에서 생산되는 주석, 텅스텐, 탄탈럼, 금. (혹은 이와 유사하게 국제적으로 규제중인 광물)

---

## 2. 환경보호

협력사는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제조공정에 있어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환경 및 자연자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1) 환경 법규 준수

협력사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 및 등록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하며 최신 법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보고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2)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에너지원, 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해야 합니다.

### (3) 오염물질 배출

대기, 수질 오염물질 배출 시, 관리법을 준수하고 배출원과 배출량을 상시적으로 파악·관리해야 합니다.

### (4) 폐기물 관리

협력사는 제품 생애주기 동안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임직원 및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모든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며 매립 및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재사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 (5) 환경규제 준수

협력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규에서 특정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물질의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물질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물질 관련 규제가 있는 경우, 협력사는 이와 같은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 (6) 녹색구매

협력사는 동일 용도인 다른 자재에 비해서 환경 부하가 적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재를 구매하도록 가능한 한 노력해야 합니다.

---

### 3. 인권 존중

협력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장소에서 국제적으로 선포된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지지하고 존중하며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편견과 불법적인 차별 없이 구성원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1) 인권 규범 준수

협력사는 모든 구성원 및 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어떠한 부당한 차별도 하지 않으며, 세계인권선언 및 ILO\*) 가이드라인 등 국제 수준의 규범과 국가별 현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2) 다양성 및 포용성

협력사는 임직원의 다양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다른 관점과 신념이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포용력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3) 차별 및 괴롭힘 금지

협력사는 성별, 인종, 나이, 피부색, 종교, 혼인, 출신국가, 정치적 견해, 장애 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의 대우에서 차별하거나 괴롭혀서는 안됩니다.

#### (4) 단체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의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 가입 및 결정,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5) 지역주민 인권

협력사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6) 아동 노동 금지

협력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국가의 법규에서 정하는 취업 최저연령에 미달하거나, 의무교육 종료 연령에 미달하거나, 15세에 이르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 (7) 강제 노동 금지

협력사는 노동력 착취 등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행위, 폭행·협박·감금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임직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 4. 안전 관리

협력사는 안전 및 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잠재적 안전 위험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1) 안전보건 제도 준수

협력사는 안전보건과 관련한 국가별 법제도 및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사업장 유지·관리 및 임직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직·계획·절차를 갖추고 이행해야 합니다.

### (2) 위험성 평가

임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위험요소 평가 및 제거, 지속적인 교육과 비상대응 훈련, 개인 보호장비 제공 등 법적 요구사항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 (3) 비상사태 대응 프로세스

비상대책과 대응절차를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산업재해와 직업별로 관리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 (4) 위생 및 안전보건

임직원에게는 모든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 제공해야 하며 육체 노동위험을 사전 통제해야 하며 생산설비나 기타 설비의 안전상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 (5) 화학물질 관리

협력사는 사업 운영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해야 합니다.

### (6) 설비 안전관리 및 안전 장비 지급

협력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한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 점검해야 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언제나 쓸 수 있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합니다.

## 5. 경영시스템

협력사는 지속가능한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1) 정책 준수 의지 표명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이행 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해야 합니다.

### (2) 법률 및 고객 요구사항 이해

본 정책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법률, 규정 및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여 이해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 (3) 리스크 평가 및 관리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중대한 리스크 발생 시,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4) 자가평가 및 시정조치

협력사는 본 정책을 포함한 현지 법 및 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자가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발견된 결함을 적절하게 시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5) 고충처리 제도 운영

협력사는 그 임직원이 윤리·환경·노동·안전에 대한 고충/불만사항을 보복 또는 위협의 두려움 없이 비밀리에 알릴 수 있는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제도에 대해서 임직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문서명	협력사 지속가능경영 정책	버전	1.0
제정일자	2024. 7. 24	개정일자	-
제개정부서	구매기획팀	관리부서	ESG경영팀

## 참고 문헌

정책	문헌 상세
협력사 지속가능경영 정책	•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행동규범
공통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